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 20. 이수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 1. 2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2.19.)
상정, 축조심사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2.2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5.3.18.)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수진 의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인력 양성과 공급이 필수적임.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독선적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의료대란이 야기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급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심의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현행 법체계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 양성 규모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현행법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와 수요자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객관적 논의를 통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추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세부 구성방안”에 따른 ‘인력수급 추계위원회’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수급추계위의 설치 근거와 심의사항 등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수급추계위의 역할 및 구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바,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강선우)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